

12. 法人稅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 4,664號, 1993. 12. 31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중 “주식”을 “주식·신
주인수권”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
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소
관세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
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다)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
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책

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
상충당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용인”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
입)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
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
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
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의 처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의

제목중 “고정자산”을 각각 “고정자산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조제9호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주주 또는 출자자
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중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
라”를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로 하고, 동조제7항중 “연불조건”을 각

각 “장기할부조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
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로 한
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6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본문중 “1천분의 1을 곱하
여”를 “1만분의 15를 곱하여”로 하며,
동호단서중 “1천분의 2를 곱하여”를
“1천분의 3을 곱하여”로 하고, 동조제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제22조제1항의 표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8”로, “2천만원”을 “1천800
만원”으로, “100분의 34”를 “100분의
32”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100분의 25”를 “100
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다

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이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제3항중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

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3항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중 “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59조제1항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5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4중 “주주”를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4282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본문중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를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호합의된 사업연도분)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호·제16조제8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연도 및 납세지변경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항·제7조제6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정유보초과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41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착수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 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17조).

나. 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 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다.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 초과 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 센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법 제22조).

라. 기업이익을 내부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 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도록 함(법 제22조의2).

마.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중고기한과 중복되지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 하도록 함(법 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깨끗한 산, 깨끗한 물, 깨끗한 마음